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610호)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22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6
1. 개정안의 주요내용	6
2. 교육감제도	7
3. 개정안의 검토	11
(1)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의 도입 여부	11
(2) 세부사항 검토	17
(3) 관계 부처 및 관계 단체 의견	23

I. 제안경위

1. 김민전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민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9. 4.

다. 회 부 일 : 2024. 9. 5.

2. 서지영의원안

가. 발 의 자 : 서지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9. 24.

다. 회 부 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민전의원안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임.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깜깜이 선거로 반복되는데 기인한 것임.

또한 시·도지사과 교육감은 각각 선출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리된 집행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외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서지영의원안

제안이유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7년, 교육감 선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교육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에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비용에도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발맞추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검증된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보다 책임감있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정과 교육행정이 조화를 이루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본인에 관한 법정 등록서류 이외에도 교육감후보자 지명서 및 본인승낙서와 교육감후보자에 관한 법정등록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교육감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되거나, 법정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거나, 교육감후보자 등록을 위한 법정 공직사퇴 시한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때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다. 공무원 등이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보궐선거등의 경우 3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후보자로 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53조제6항 신설).

라. 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의 선거

운동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6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후보자등록시 지명한 교육감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¹⁾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구 분	김민전의원안	서지영의원안
교육감후보자의 지명 등 (제49조의2)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명을 교육감후보자로 지명	
	규정 없음	후보자의 교육감후보자 지명 관련 금품수수금지 의무조항 추가(제7항)
기타 절차규정 제52조 등록무효, 제53조 공무원입후보, 제54조 후보자사퇴신고, 제55조 후보자등록공고, 제64조 선거벽보, 제65조 선거공보, 제192조 당선무효 등, 제219조 선거소청 제223조 당선소송	러닝메이트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로 양 개정안 규정 대동소이	
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수 (제67조의2)	규정 없음	교육감후보자는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운동 가능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0조)	규정 없음	후보자의 교육감후보자 지명 관련 금품수수금지 의무 위반시 처벌

1) 러닝메이트(Running mate)의 사전적 의미는 “(보조를 조정하기 위해) 같이 뛰게 하는 말”, “(선거에서)하위 입후보자”를 의미함.(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상 두 관직(선출직)을 동시에 뽑는 선거제도에 서 아래 관직의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를 일컫는 정치용어임.

2. 교육감제도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²⁾하여 교육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임.³⁾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교육제도를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교육제도로서의 교육감 선거제도 또한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지

-
- 2)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3) [헌법재판소 2004.3.25. 선고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
“헌법재판소는 1992. 11. 12. 선고한 89헌마88 결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교육자에 의하여 전담되거나 적어도 그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종교적 중립성과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판례집 4, 739, 762)라고 밝힌 바 있다.”

방교육청의 수장⁴⁾으로 교육감선거제는 교육자치제의 일환이고, 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제와의 연계 속에서 형성·변화되어 왔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등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것임.⁵⁾

구체적으로, 교육감선거제의 변천⁶⁾을 살펴보면 이른바 형식적 교육자치 시기의 교육감은 중앙 정부의 영향 아래 있던 임명제였음. 즉, 교육위원회의 추천과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음. 형식적 명목상의 교육자치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임.

1991년 지방자치 도입 후에는 교육감 선임이 광역의회에서 선임된 교육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게 됨. 이른바, 교황식 투표⁷⁾ 과정에 과반 수를 획득하지 못한 2위, 3위 간에는 합종연횡이 다반사로 일어났음.

이후 1998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97%)과 교원단체(당시 각 시·도 교총)가 추천한 선거인단(3%)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4) 「**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5) 「지방교육자치법」 제2조에서는 지방의 교육사무를 시·도의 사무라고 밝히고 있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6) 이하의 내용은 주로 다음 논문을 참고함.

고진, “교육감 주민직선제(2007-2022) 결과 진단과 대안 논의”, 교육법학연구 제36권1호(2024)

조홍순, “교육감선거제 변화의 신제도주의적 분석”, 인문사회21 제9권4호(2018)

7) “교황식 투표(conclave)”란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전체 구성원이 후보가 돼 무기명 비밀투표로 대표를 뽑는 방식을 의미함.

선출하였고,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인단에서 선출하였음.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라는 구성원의 규범적 참여 명분은 좋았으나, 현직 교육감들은 당해 학교 교장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 시기가 되면 교육청 직원들이 일선 학교 지역위원으로 대거 출동하는 부작용도 겪었음. 선거인단이 소수여서 후보들이 이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기가 쉬웠는데, 제주도에서는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학부모위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음.⁸⁾

그 결과, 2006년 국회에서 주민직선제 교육감제도를 도입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전부개정⁹⁾이 이루어졌고, 최초의 교육감선거가 2007년 이루어지게 된 것임.

8) 고전, “교육감 주민직선제(2007-2022) 결과 진단과 대안 논의”, 교육법학연구 제36권1호(2024), p.6.

9) 법률 제806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12.20. 전부개정, 2007.1.1. 시행)

《 교육감선거제 변천 》

	1949~1991	▶	1991~1997	▶	1997~1999	▶	2000~2006	▶	2007~현재
선 거 방 식	임명제		간선제 (교육위원)		간선제 (선거인단)		간선제 (학교운영위원)		주민직선제
	-교육위원회 추천, 문교부 장관 경유 -대통령 임명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 선출 -교육위원회, 교육감 호선		-학교운영위원 선거인 + 교원단체 선거인 선출		-학교운영위원 전원 선거권 확대 -교원단체 선거인단 폐지		-주민의 보통· 평등·직접· 비밀선거
자 격 요 건	-교육행정 및 교육연구경력 -정당원 배제		-교육경력과 교육전문직 경력 20년 이상 -정당원 배제		-교육경력과 교육공무원 행정경력 5년 이상 -정당원 배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 -과거 2년간 정당인이 아닌 자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 -과거 1년간 정당인이 아닌 자

※ 자료: 조흥순, “교육감선거제 변화의 신제도주의적 분석”, 인문사회21 제9권4호(2018), p.459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수정 및 편집

3. 개정안의 검토

(1)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의 도입 여부

교육감선거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교육감제도의 쟁점임.¹⁰⁾ 교육감의 선출 방식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임.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과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선출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리된 집행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바,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¹¹⁾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후보자등록시 지명한 교육감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과 연계하여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시·도지사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당선된다면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의 정책 연계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교육감이 소속

10) 김규태, “국내 교육감 연구동향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제29집제2호(2022), 이 논문은 최근 교육감 관련 연구의 내용과 동향을 잘 보여주고 있음.

11) YTN(2024.10.20.), “무관심 속 치러진 교육감선거...직선제 무용론 고개”
중앙일보(2022.6.2.), “시도지사-교육감 미스매치 8곳...지자체 vs 교육감 갈등 커진다”
중앙일보(2022.5.13.), “교육장관 17명인셈...제왕적 교육감, 백년대계를 4년짜리로”

된 정당이 시·도의회도 다수를 점할 경우 매년 벌어지는 예산 갈등도 방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됨.¹²⁾ 또한, 한번의 선거로 시·도지사과 교육감을 모두 선출할 수 있어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¹³⁾

다만, 교육감이 시·도지사 선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 지위가 시·도지사에게 예속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원활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사실상 종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¹⁴⁾ 또한 시·도지사의 당선에 기여한 정당의 요구에 교육감이 사실상 예속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헌법 제31조제4항¹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¹⁶⁾

제21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시·도지사과 교육감 간의 정책 노선이 달랐을 때 생기는 갈등의 부작용 해결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교육과 일반행정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러닝메이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와 직선제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낮은 투표율, 선거비용)은 보완을 통해 해결하면

12) 가령, 2015년 경남예선 진보 교육감과 보수 지자체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갈등이 발생함. 박종훈 당시 경남교육감이 경남도의 급식 감사를 거부하자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급식 예산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임. 결국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긴 했지만, 합의 이후에도 혼란은 지속됨. 중앙일보(2022.5.13.), “교육장관 17명인셈...제왕적 교육감, 백년대계를 4년짜리로”

13) 10월 16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은 23.5%에 그쳐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선거 관리 비용으로 세금 565억원이 투입됨. 조선일보(2024.10.17.), “계속되는 서울 진보교육감...투표율 23.5%, 직선제 무용론 나와”

14) 음선필, “러닝메이트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검토”, 홍익법학 제24권2호(2023), p.66.

15)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6) 연합뉴스(2024.3.7.),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된다는 이유로 러닝메이트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각각 제기된 바 있음.

《 제21대국회 러닝메이트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 》

구 분	논의사항
도입 찬성	-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정책 노선이 달랐을 때 생기는 갈등의 부작용 해결 필요 - 교육감 직선제 결과 낮은 투표율과 높은 선거비용 문제 발생 -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교육과 일반행정의 연계와 협력 강화 필요
도입 반대	- 러닝메이트 제도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 - 러닝메이트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교원 전체의 정치적 기본권 확장 필요 - 낮은 투표율 문제는 선거정보 제공 확대로 해결할 필요 - 선거비용 문제는 선거공영제 강화할 필요

※ 자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2023.5.30.) 회의록 내용 요약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와 개정안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교육감선거제 비교 》

구 분	교육감 직선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교육감 선출방식	-주민의 보통·직접·비밀·평등 선거로 교육감 선출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교육감 후보자를 임명
장점	-주민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제고	-선거비용 절감 -시·도지사-교육감 간 효율적 정책 연계
단점	-높은 선거비용 -지방 일반행정과 정책노선 갈등 -교육의 정치화에 따른 과도한 이념 대립	-교육의 일반행정에의 예속 (교육의 자주성 저해) -교육감 후보자의 정치적 지명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저해 -시·도지사-교육감 간 지지후보 다를 경우 해당 의사 선거에 반영못함

헌법재판소는 교육감선거제와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에서는 주민자치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적 요청만을 철저하게 관철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자치의 특성상 민주적 정당성(=주민직선제)에 대한 요청이 일부 후퇴하더라도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주민직선제 외 교육감 선출방식의 헌법적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음.

《 헌법재판소 2002.3.28. 선고 2000헌마283 판례 》

우리 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적 본질에 관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교육감독권 등)도 이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기반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런데, 국민주권, 민주주의원리는 그 작용영역, 즉, 공권력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구현방법이 상이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도 지방자치권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중의 자치’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요청은 어느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헌재 2000. 3. 30. 99헌바113, 판례집 12-1, 359, 368-369). (중략)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에도 임명제나 다양한 형태의 간선제가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나라마다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장)의 지위 및 권한도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선출제도 또한 임명제, 간선제, 주민직선제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교육문제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역사, 전통 및 교육의식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교육제도도 상이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에서는 주민자치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적 요청만을 철저하게 관철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자치의 특성상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청이 일부 후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에 앞서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성과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의 정책 연계 필요성, 관계 부처 및 이해당사자¹⁷⁾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은 각 주마다 주 헌법이나 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을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며, 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의 경우 임명제의 선출방식을 택하고 있음.

《 외국의 교육감(교육장) 선거제 비교 》

국가	선출방식	내용	비고
미 국	임명제·직선제 (주마다 다름)	◦ 각 주마다 주 헌법이나 교육법에 따라 교육감 선출 또는 임명절차 상이 - 주교육위원회 임명(22개 주+특별구) - 주지사 임명(14개 주) - 주민직선(13개 주) - 주지사의 교육감 겸직(1개 주)	- 일부 주 직접 선거 - 일부 주 정당표시 가능
일 본	임명제 (지방자치 단체장)	◦ 자치단체장이 교육위원 임명 ◦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장을 임명 ◦ 최근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한 사례도 있음	- 1948-1956년까지 주민직선제로 선출
영 국	임명제 (지방의회)	◦ 광역단위 지방교육행정기관 없음 ◦ 기초단위 교육감은 LEA(지방교육 행정 집행 및 의결 기구)가 선임함	- 전통적으로 성직자 임명 - 최근 교육전문가 임명

17) 교육서비스의 수요자(학생, 학부모) 등

국가	선출방식	내용	비고
독 일	임명제 (지방자치 단체장)	◦ 교육장은 주 교육부 장관이 임명함 ◦ 주교육부장은 주지사가 임명함	- 주 단위의 교육장 제도 운영
프랑스	임명제 (대통령)	◦ 학구의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 ◦ 대통령이 대학교수들 중에서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국장 임명	- 학구단위(교육행정구역) 교육감 제도 운영
핀란드	임명제 (지방자치 단체장)	◦ 교육국 국장, 교육문화서비스국 국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 지방정부의 경우 교장 검직 가능

※ 자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자료(2023.5.30) p.6.

(2) 세부사항 검토

① 교육감후보자의 지명(안 제49조의2) 등

개정안은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시·도지사가 후보자등록시 지명한 교육감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해당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 경과¹⁸⁾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률 개정안 》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내 용
제2203609호	2024.09.04.	김민전의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제2204226호	2024.09.24.	서지영의원	(시·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지명한 교육감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한편, 서지영의원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특정인을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는 것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 수수를 금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

¹⁸⁾ 해당 개정안들은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1.3. 현재 기준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황임.

230조제6항)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구 분	현 행	김민전 의원안	서지영 의원안
교육감 후보자의 지명 등 (제49조의2)	<신 설>	(제1항) <u>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u>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u>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u> 1명을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1항) <u>누구든지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u> <u>특정인을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는 일과</u> <u>관련해 금품·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u> <u>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를</u> <u>지시·권유·요구·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u> (금품수수금지의무 부과)
		규정 없음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0조)	⑥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의무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천만원 벌금	규정 없음	현 행 + <u>교육감후보자의 지명 관련</u> <u>금품수수금지 의무위반 시</u>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천만원 벌금

이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을 통한 교육감후보자 지명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러닝메이트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현행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그 의무위반 행위에 따라 적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항)에서 많게는 7년 이하의 징역(제5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천만원 벌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현행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의 벌칙 》

구 분	의무위반행위	벌칙
제1항	투표 또는 당선·낙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제공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 등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관해 지시·권유·요구·알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	당선·낙선 목적 금품 운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항	선관위 위원·직원 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제6항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의무(§47의2①·②)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의 벌칙)
제7항	당내경선 관련 당원 매수금지의무 위반(제1호)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항	제7항제2호·제3호 관련 지시·권유·요구·알선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서지영의원안 제67조의2)

서지영의원안은 교육감후보자가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시·도지사 선거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구 분	김민전의원안	서지영의원안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67조의2)	규정없음	<u>교육감후보자는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u> (이 경우 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선거운동의 예에 따른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
서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¹⁹⁾하여 각각의 개별 조문에서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음.²⁰⁾

현행법상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²¹⁾ 외에 개별 조문에

19)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 5. 14.>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현행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형식은 네거티브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이나 실질은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머니투데이(2019.7.10.), “선거운동 규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여야 공감”

미디어펜(2018.12.19.), “국회 정개특위, 선거운동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

21)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

서 제한하는 선거운동방법 중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후보자 외에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등을 선거운동주체로 허용하고 있음.²²⁾

또한, 행렬 등의 금지 조문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 포함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²³⁾

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 22)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23) 「공직선거법」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개정안이 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선거운동 방법을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은 하나의 선거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모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도의 취지상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교육감후보자의 역할이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크게 다를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감후보자가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선거운동원(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같이 행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²⁴⁾은 없는지, 교육의 기본원칙인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독립성이 침해될 우려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감을 정치적 인물로 인식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떨어지고, 교육행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유무

(3) 관계 부처 및 관계 단체 의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 러닝메이트제 등 교육감 선출 방법을 정하는 것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국회의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지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 근거로 러닝메이트제도는 선거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사이의 정책 갈등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으나, 정당 등 정치권력이 교육행정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교육행정이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 권력에 예속될 우려가 있으며, 시·도지사 후보자와 러닝메이트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선호가 다른 경우 투표를 통하여 국민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② 교육부²⁵⁾

교육부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임.

그 근거로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받는 것이므로 교육감 선거제도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며,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활동에 정치적 개입이 없도록 한다면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된다는 점을 들고 있음.

③ 시·도교육청

의견을 제출한 9개 시·도교육청 중 8개 시·도교육청(인천,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와도 역행하므로 법률 개정 반대한다는 입장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조건부찬성 입장으로 러닝메이트 도입에

25) 이하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의견은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임.

따른 교육자치와 자주성의 훼손 및 향후 교육제도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에는 반대하나,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한계 극복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간 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김민전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49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지명 등) ① 시·도지사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지명한 사람(이하 “교육감후보자”라 한다)에 관한 제4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교육감후보자 지명서 및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의 제출, 전과기록의 조회, 전과기록의 회보 등에 대하여는 제49조제10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① ~ ④ (생략)

<신설>

④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에 관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는 제1항에 따른 지명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후보자가 사퇴·사망한 경우에는 교육감후보자 지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교육감후보자지명에 관한 각종 서류의 서식과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후보자등록 후에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지명한 교육감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u>제24조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u> <u>2.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u> <u>3.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u>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후보자로 지명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생략) <u><신설></u>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교육감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
<u>第55條(候補者登錄 등에 관한 公告)</u> <u>候補者가 登錄・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이</u>	<u>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u> <u>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가-----</u> <u>-----</u> <u>-----</u>

를 公告하고, 上級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하며, 下級選舉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관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

제64조(선거벽보) ① -----

[illegible]

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
· 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
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
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첨부한
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첨부장
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
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
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
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
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
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
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
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
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
보자명단을, 시·도지사선거에 있
어서는 해당 교육감후보자의 성명
· 경력을-----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또는 교육감후
보자의 성명·경력이-----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⑥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 ⑫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 -----

-----.

⑥ -----
경력이나 교육감후보자의 성명·경력에-----

-----.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

-----.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
· 성명 · 학력 · 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 ⑭ (생략)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

效 등) ① · ② (생략)

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

1. (생략)

2. 當選人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생략)

④ · ⑤ (생략)

제219조(선거소청) ① (생략)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
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선의 효
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政黨 또
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14
日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제190조(지

하며,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후보자의
사진·성명과 제8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

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제2항 ·
제3항 · 제5항-----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19조(선거소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5항-----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내지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 · 公告 · 通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訴請人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自治區 · 市 · 郡議員選舉 및 自治區 · 市 · 郡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市 · 道 選舉管理委員會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市 · 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第223條(當選訴訟) ① 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30日 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③ ~ ⑦ (현행과 같음)

[illegible]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 ----- ----- ----- ----- ----- ----- ----- ----- ----- -----.
---	---

<서지영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49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지명 등) ① <u>시·도지사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여야 한다.</u> ② <u>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지명한 사람(이하 “교육감후보자”라 한다)에 관한 제4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교육감후보자 지명서 및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의 제출, 전과기록의 조회, 전과기록의 회보 등에 대하여는 제49조제10항 후단을 준용한다.</u> ④ <u>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u>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에 관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할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는 제1항에 따른 지명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후보자가 사퇴·사망한 경우에는 교육감후보자 지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특정인을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으며, 이를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교육감후보자지명에 관한 각종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제52조(등록무효) ① ~ ④ (생략) <u><신설></u>	<u>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제52조(등록무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후보자등록 후에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지명한 교육감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u>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 2.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후보자로 지명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第54條(候補者辭退의 申告) (생략)</u>	<u>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등) ①(현</u>

<신 설>

第55條(候補者登録 등에 관한 公告)

候補者가 登録・辭退・死亡하거나
登録이 無效로 된 때에는 당해 選
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이
를 公告하고, 上級選舉管理委員會
에 보고하여야 하며, 下級選舉管理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선거벽보) ① 選舉運動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候補者의 寫眞(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姓名·記號(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政黨推薦 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

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교육감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가

제64조(선거벽보) ① -----

[illegible]

間 및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

· 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그 밖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洞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邑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面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比率를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貼付場所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
보자명단을, 시·도지사선거에 있
어서는 해당 교육감후보자의 성명
· 경력을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⑥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 ⑫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또는 교육감후보자의 성명·경력이-----

⑥ -----
후보자의 경력등이나 교육감후보자의 성명·경력에-----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

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 ⑭ (생략)

<신설>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①·② (생략)
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

하며,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후보자의 사진·성명과 제8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감후보자는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의 예에 따른다.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원선거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第223條(當選訴訟) ① 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30日 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23조(당선소송) ① -----

제52조제1항・제3항・제5항-----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

⑤ (생 략) ⑥ <u>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u>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⑦ · ⑧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47조의2제1항 · 제2항 또는 제</u> <u>49조의2제7항을</u>----- ----- -----. ⑦ · ⑧ (현행과 같음)
---	---